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462
제 출 자	임현주 의원 외 8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·조사 결과보고,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

- 제1조(목적) 중 「시행령 52조」를 「시행령 제53조」로
- 제9조(감사·조사결과보고) 중 「시행령 제50조」를 「시행령 52조」로
- 제10조(징계) 중 「시행령 제46조」를 「시행령 제49조」로,

「시행령 제47조」를 「시행령 제50조」로 변경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.12.16.자로 개정되어 2022.01.13.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 중 3개 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.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은 제1조(목적) 중 “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지방자치법」 제49조[1]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[2]”로, 제9조(감사·조사결과보고) 중 “영 제50조”를 “영 제52조[3]”로, 제10조(징계) 중 “영 제46조”를 “영 제49조[4]”로, “영 47조”를 “영 제50조[5]”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지방자치법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~ ⑥항 생략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(운영 규정)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) ① 감사·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,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·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4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~ ④항 생략

5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(주의 의무)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도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단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.